



이영우 주임연구원  
한국발명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 현행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비판적 고찰

## I. 서 론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 소위「실용신안 선등록제도」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실질적 요건의 성립여부를 확인한 후 권리를 부여하던 종래의 ‘심사주의’ 심사제도를 방식 및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소위 ‘무심사 선등록’ 제도로 바꾼 것에 그 특징이 있었다.

이는 기술이 급변하는 실용신안제품에 대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제품의 life-cycle이 짧은 고안의 기술사장을 방지하고 적기에 사업화 할 수 있는데 유리하다는데 그 제도채택의 취지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제도 도입부터 제기된 선등록제도의 문제점들은 제도 시행 약 4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출원 후 기초적 요건 심사만 거치면 등록이 되는 무심사주의의 외형을 가지면서 실질적 권리성의 인정과 그 행사를 위하여서는 기술평가라는 실체 심사를 거쳐야 하는 변형적인 무심사 선등록제도의 성격으로 인하여 등록된 권리이나 일반 공중에

계는 그 지위가 모호하게 되었고 동시에 등록된 권리에 실체적 심사 절차를 부가함에 따른 절차의 복잡성이 가중되어 권리의 실질적 인정을 위한 처리기간이 현실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본래의 취지와 달리 권리의 조기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업무의 효율성의 저하되는 문제 등의 무심사주의와 심사주의 제도 양측의 부정적인 문제점을 모두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예상된 바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용신안의 출원이 감소하여 제도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실용신안을 통해 보호하려는 기술의 사업화가 급한 부분에서의 실용신안제도가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실용신안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심사관들에게 복잡한 제도적 성격으로 인한 업무의 과중함을 야기하고 이에 따른 심사업무의 효율성 제고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특히 등의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발명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제도운영의 전반적인 여건도 변화하여 이에 따른 현행 실용신안제도의 발전적인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

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 II. 현행 실용신안제도의 문제점

### 1. 현행 선등록제도 도입시의 논의

최초로 실용신안의 무심사제도로의 법 개정안이 만들어지면서 그 논의가 본격화 될 때 특허청의 최초의 안은 완전 무심사주의제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제도의 채택과정에서 변리사 단체 등의 반대와 권리의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의 제도적 약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원래 기술평가제도가 단순한 감정서로서 작성하는 방식에서 권리 유지 취소를 확정하는 결정제도로 변경되게 된 것이다.

당시 특허청은 제품의 life-cycle이 짧은 기술에 대하여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고 당시 종결기준 약 36개월 걸리던 특허·실용신안 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도모하기 위한 실용신안제도 개선안으로서 무심사주의 선등록제도로의 개정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이 선등록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문헌을 보면 무심사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은 주로 변리사들의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내용은 주로 무심사제도의 도입을 실용신안제도 폐지의 前 단계로서 간주하고 그 제도를 채택하고 있던 일본과 독일의 산업발전 정도와 실용신안 출원 현황을 근거로 그 도입의 시기 상조론을 주장하였고<sup>1)</sup> 도입 취지였던 제품의 life-cycle이 짧은 기술을 보호하

기 위한 제도로서의 무심사제도의 도입 대신 우선 심사제도의 개선운용으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sup>2)</sup>하고 있다. 기술평가서 작성성이 심사 이상의 업무부담이 될 것이라는 등의 반론을 제기하였는데<sup>3)</sup> 이는 현재에 이르러서 상당히 타당성 있는 주장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변리사들의 심사주의 실용신안제도의 유지 주장과 완전 무심사주의 실용신안을 염두에 두었던 특허청의 정책제안이 타협점을 찾은 것이 현재의 변형된 무심사주의 실용신안제도로 보여진다.

생각컨데, 결과적으로 그리 길지 않았던 정책 실시의 가까운 미래의 결과를 예전하지 못한 특허청의 성급한 정책입안과 단순히 실용신안의 수요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실체적 심사의 내용을 포함하는 심사주의 실용신안제도에 집착한 변리업계 등의 태도가 현재의 기형적인 무심사제도를 만들어낸 주요한 요인이 된 것일지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 2. 당면한 문제점

#### (1) 권리의 불확실성

당면한 무심사 선등록제도의 제도적인 약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등록된 실용신안권의 법적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의 불확실성은 제도적 성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실체적 요건의 심사없이 등록되어진 권리의 존재 자체가 실용신안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신을 야기하는 것

1) 정광선, '실용신안 무심사 선등록제도 도입의 문제점', 『창작과 권리』, 통권12호, 세창출판사, 1998년, 82면

2) 앞의논문, 92-93면,

3) 앞의논문, 95면. 전체출원의 10%정도만이 기술평가서 작성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하던 특허청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당시 실용신안의 심사청구비율이 50%를 넘어섰던 바 최소한 실용신안 출원의 50%는 기술평가서 작성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2002년 현재 약 37.1%의 기술평가 청구율을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변리사측의 견해가 비교적 정확히 예측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다.

실체심사없는 등록증의 오·남용의 가능성이나 존재하므로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들은 예전의 실질심사를 거쳐 등록된 실용신안과 혼동하여 그 피해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등록된 권리이지만 사업화를 위하여 그 사업화 자금이나 R&D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데 선등록제 하의 실용신안권의 불확실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실체심사없이 등록되므로 유사기술의 등록건수가 증가하여 사업화 등의 계속적 추진시 자신의 권리에 대한 확신을 위한 감시부담이 증가한다.

한편, 이러한 등록된 권리의 불확실성은 우리나라의 변형된 무심사제도 하에서는 기술평가청구의 수요를 감소시킬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기술평가 심사의 부담으로 악순환 되는 것이다. 2003년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 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권리의 불확실성의 문제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sup>4)</sup>

특별히 기업의 특허실무자 및 변리사 계층에서의 문제점 제기는 그 지적된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는 현 제도의 권리의 불확실성이 기업활동에 장애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무자의 입장에서 그 권리성의 없는 등록권이라는 제도적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지재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적 법적 인식 내지 전통적 관념에 비춰 볼 때 무심사의 선등록제도란 개념이 낯설고 부담스러운 것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 (2) 권리 부여의 비효율성 대두

도입 당시 특허청의 예상으로는 당시 등록된 권리에 대한 심판 청구율이 3.2%(출원건수 대비 1%)이고 등록된 실용신안의 사업화율이 18%(출원건수대비 6%)이므로 기술평가서 청구율이 예방적 청구를 고려하여도 출원건수 대비 약 10% 정도로 예상하였으나, 선등록제도 도입 후 기술평가 청구율은 꾸준히 3~40%대를 유지하는 등 기술평가의 청구 즉 심사의 수요가 예상을 초과하여 구 실용신안제도 하의 심사청구율을 약간 하회하는 정도가 되었다.

더 나아가 기술평가를 권리결정의 제도로 만든 결과로 이를 지지하기 위한 이의신청과 정정청구 제도 등의 채택으로 인하여 그 심사부담이 과중하게 되었다.

실제로 특허법과 비교하였을 때 그 심사과정을 비교하여 보면 특허법이 [실체심사-최초거절이유 통지-보정서-(최후 거절이유통지-보정서)-특허결정]의 과정을 거치는 데 비하여 실용신안의 경우 [기초요건심사(보정명령-보정서-설정등록)-기술 평가(취소이유통지-정정청구-정정불인정통지-정정의 보정-기술평가결정)]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명백히 그 제도적 복잡함이 드러난다.

따라서 수요는 줄지 않고 그 처리 과정이 복잡해진 심사제도를 갖게된 선등록제도 하에서 심사관들의 업무는 가중되고 그 처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기술평가를 신청한 출원인들의 불편은 심해진 것이다.

기술평가 착수 기간은 2000년 11월 기준으로 약 7개월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시행 초기(1999년 7월)의 2개월에 비해 급격히 오래 걸리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청구불인정 통지 등 복잡한

4) 이영우, 김병일, 김호,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장기 발전 방안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 연구센터, 66면

절차로 인해서 실용신안 한 건의 기술평가를 통한 등록유지/취소결정 처리가 특허 한 건의 심사업무 보다 과중하다는 것이 심사실무를 담당하는 심사관들의 고충이다.

또한 실용신안 기술평가 업무량이 많아 그 영향으로 특허심사기간의 단축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간 실용신안 출원량이 다소 줄었음에도 현재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선등록제도 도입 직전인 1998년과 2002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실용신안제도가 그 절차적 복잡함과 제도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도입 당시 취지였던 특허와 실용신안의 심사업무의 효율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여진다.

### III. 실용신안 심사제도의 비교법석 분석

#### 1. 심사주의제도

우리나라 구법에서 채택한 실용신안 심사제도로서 특허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출원 후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실질요건을 심사하여 실용신안 등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심사주의 심사제도하에서는 실용신안과 특허와 심사제도에 있어서 절차상의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 단, 그 심사의 내용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과 진보성의 수준이 특허와 상이하다 할 수 있다. 심사주의는 당해 출원한 고안이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는가의 여부 및 실용신안 불허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기 때문에 권리의 안정성, 신뢰성이 높고 부실 실용신안을 예

방할 수 있으므로 실용신안권의 유·무효를 둘러싸고 벌리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또 한 권리의 존재가 안정되고 재산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권리를 행사하는 데도 주저할 염려가 없는 등의 일반적인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심사주의는 권리설정을 위한 심사기간이 있으므로 권리가 등록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문제가 된다. 심사건수가 많아져서 심사가 장기화 되면 출원인에게 큰 부담이 되며 심사를 하는 관청의 입장에서도 심사의 많은 인력과 경비가 소요되고 심사적체가 심화될 수 있는 일반적인 단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 실용신안법에서 채택한 제도는 출원공개제도와 심사청구제도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심사주의 심사제도는 실용신안의 등록과 권리성을 특허청이 권한 있는 결정으로 부여하게 되며, 따라서 실용신안권의 유지 및 행사에서 출원인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거의 없어지는 제도로서 심사기간의 단축이 이루어진다면 확실한 권리성을 담보하는 명확한 제도로서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구 실용신안법, 일본 구 실용신안법, 대만의 실용신안법, 스페인,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sup>5)</sup>

#### 2. 완전 무심사제도

완전 무심사주의 즉 원래 의미의 무심사주의의 특징은 실용신안을 등록 받기 위해서 비교적 간단한 형식요건 내지 기초요건만을 심사하고 산업상

5) 윤선희, "실용신안무심사제도의 도입의 문제점", 『지적재산권 논문집(제5집)』, 대한변리사회(1998년 6월), 371-430면.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은 심사하지 않는 제도이다. 또한 완전 무심사란 등록 이후 기술평가이던 조사보고서이던 실용신안권자의 권리의 행사를 위한 특허청 일체의 심사행위가 권리성 인정을 위한 절차로 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권리성의 인정은 오로지 심판이나 소송의 단계에서 즉 권리자체가 분쟁의 요인이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특허청의 심사가 아닌 다른 절차나 소송에서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무심사제도는 출원의 형식적 사항이나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실용신안을 허여하므로 권리설정이 신속하고 고안의 공개가 조기에 이루어지며 심사에 많은 인력과 경비가 투입되지 않아도 되므로 심사의 부담이 없다는 일반적인 장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권리의 설정이 빨리 이루어지므로 등록된 권리를 가지고 고안의 실시를 서둘러야 하는 life-span이 짧은 기술의 사업화에 유리할 것이라고 일옹 판단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실용신안을 허여하기 때문에 부실한 권리가 양산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유·무효 분쟁의 소지가 높고 권리의 안정성이나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위에서 장점으로 고려된 조기 사업화의 가능성도 그 투자자본의 유치나 사업망의 확보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게 된다. 또한 기초적인 심사만으로 등록되는 심사제도 이기에 그 비용이 적을 것이라고 기대되지만 분쟁의 소지가 높아 분쟁 발생 시 추가적인 절차적 경제적 부담이 끼울 수도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소위 완전 무심사주의란 출원인이 그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출원인의 책임 하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절차의 간소함을 담보하기 위하여 권리의

불확실성을 감내하는 제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생각컨데 완전 무심사주의는 제도 운영의 부담이 제도의 수요자 즉 즉 실용신안 출원인과 등록권자에게 보다 많이 주어지는 제도로서 제도의 이용에 수요자의 수용의지와 이용의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완전 무심사주의 실용신안제도로서 분류 될 수 있는 국가는 현 일본 실용신안법, 독일 실용신안법, 프랑스 실용신안법, 중국 실용신형법,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의 국가의 실용신안법을 들 수 있으며 그 추진이 중단된 1995년 EU의 공동체 실용신안제도(안)에서 채택이 논의된 바 있다.

### (1) 독일/ 일본의 경우

완전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두 나라 모두 기술평가서나 조사보고서로서 권리의 유지취소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나 그 기술평가서나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즉 일본의 기술보고서의 경우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실체적 요건을 모두 검토하여 실용신안권의 유효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독일의 조사보고서는 실체적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 자료로서 선행기술에 대한 조사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출원인 혹은 실용신안권자의 책임 하에 권리의 유지나 행사를 결정하려는 완전 무심사제도의 같은 취지 하에서도 일본에 비해 독일의 실용신안법이 더욱 실용신안권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의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이는 실용신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일본의 경우는 실용신안제도의 활성화 내지 소발명의 보호라고 볼 때, 독일의 경우에는 소발명 보호의 취지 이외에도 실용신안을 잠재적 특허로

이용하려는 제도적 목적이 있다는데 그 차이가 있는 것이다.

현재 이중출원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일본과 인정하고 있는 독법의 차이도 이 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 (2) 중국의 경우

중국의 경우에는 완전 무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그 제도적 근간을 독일법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경우에는 그 산업발달의 정도가 선진국의 수준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무심사제도의 취지를 잠재적 특허 내지 그 권리형태의 조기 확보라는 것으로 살펴봄으로써 현재 중국 내 실용신안제도의 이용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 (3) 유럽 통일실용신안제도 채택시도와 무심사제도

한편, 다양한 실용신안제도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경우 실용신안제도의 통일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 국가가 특허와는 달리 그 통일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실용신안제도의 특성상 특허제도와는 달리 각 국가의 특성에 따라 운영되어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별히 유럽의 다수 국가가 채용하고 있는 완전 무심사주의 심사제도가 그 통일화 과정에서는 법률적 불확실성과 권리성의 불완전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결론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실용신안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에서의 무심사주의에 대한 제도적 불안감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형식적 무심사제도 (변형된 무심사제도)

위에서 살펴본 완전 무심사제도 하에서의 권리

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무심사제도의 기본적 기초인 형식적 내지 기초적 요건심사만으로 실용신안 등록을 가능하게 하고 후에 권리의 유지나 취소의 결정(이의신청시)이 필요한 경우 특허청이 수행하는 기술평가제도를 실체적 심사로 하여 그 권리성을 결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무심사제도에 이러한 실질 심사 요소를 가미한 이유는 무심사제도의 가장 커다란 단점인 권리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즉 등록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발명 등의 사업화 기간을 짧게 해 주면서 기술평가제도로서 권리성을 담보하여 주고자 하는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등록된 권리가 그 기술평가를 받을 때까지는 불확실한 상태를 면할 수 없으며 또한 기술평가제도가 권리성을 결정하는 절차로 인식되어 출원되는 권리의 상대부분이 기술 평가를 신청하게 되고 이는 심사부담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며, 나아가 권리성 결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의신청 및 정정제도를 인정하게 될 때 따라서 심사절차가 복잡하게 되는 단점이 생길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실용신안법, 호주의 innovation patent제도가 이 범주에 속하는 심사제도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호주의 경우를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형식심사 후 실체적 심사로서 권리를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실용신안 심사제도를 가지고 있고 실체심사이후 재심사제도를 채택하는 등 우리 제도와 비교할 때 오히려 그 제도적 복잡성이 심하다고 볼 수 있다.

호주의 실용신안제도는 현재 그 운영 기간이 짧고 출원량 (2002년 1050건)이 우리나라(2002년 39147건)의 약 1/36에 지나지 않은 관계로 아직 효율성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실용신안제도와 같이 특허청의

결체적 심사에 의해서 권리의 완전성을 확보해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그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된다.

#### 4.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용신안제도는 그 무심사주의 제도채택의 대세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필요와 형편 그리고 지식재산권 운영에 대한 전통적 관념에 따라 각기 조금씩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호주 특허청의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외국 입법례의 무심사주의의 주류적 현상과 그에 따른 외국에서의 운영현황을 자국에서도 기대하는 의견은 그 객관성을 결여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비교법적인 연구에서 우리는 각국의 제도 채택의 취지나 목적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기술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나, 그 제도적 장치가 운영되는 각 국가마다의 여건이 다름을 인식할 때 제도 수용에 있어서 우리의 여건에 맞는 제도로 비판적 수용이 필요한 것이다.

### IV. 결론 및 제언

#### 1. 권리의 확실성 확보

앞서 언급한 2003년도 한국발명진흥회 지재권 연구센터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현행 실용신안제도의 문제점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점 중 하나는 권리의 불확실성에 따른 혼란과 불신의 개선이다.

이상 위의 장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리의 불확실성의 문제는 무심사제도의 제도적 성격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무심사주의제도의 경우 그것이 완전 무심사제도이든 변형된 무심사제도이든

간에 실체적 심사없이 권리가 등록되고 이러한 등록된 권리에 의해서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의 유지가 확정된 것이 아닌 동안에는 그 사업화의 계속을 망설일 수밖에 없으며 제3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발명활동이나 사업화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의 법적 확실성 확보의 문제는 그 실용신안제도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제도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 비중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독일이나 중국의 경우 실용신안을 소발명의 일종의 잠재적인 특허로 인식함에 따라 실용신안자체의 권리성에 대한 요구가 크지 않은 반면 우리나라나 일본 그리고 호주의 경우처럼 구 제도 하에서 등록된 권리의 확실성에 기하여 그 고안을 시행하던 인식이 남아있는 경우 우리나라와 호주 같은 국가에서는 변형된 무심사주의를 채택하여 실질심사의 의의를 갖는 기술평가 내지 심사단계를 두게 되었고, 완전 무심사주의라고 볼 수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독일과는 달리 잠재적 특허로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이중출원제도보다는 권리성 판단에 필요한 보다 정확한 기술평가서의 제공에 더욱 주력하는 제도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의 선택이라면 우선적으로 완전무심사주의는 그 대안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변형된 무심사주의도 현행 실용신안법 상 제도의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 2. 실질 심사처리의 효율성 확보

또 하나의 중요한 현안인 실질 심사처리과정 즉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는 단계의 효율성의 확보의

문제는 일단 제도의 간소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대안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식 완전 무심사제도의 경우를 대안으로 들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 수준의 실질심사는 그 심사의 적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권리성을 확인하는 단계가 심판의 단계로 넘겨져 있으므로 효율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심사주의제도의 경우 또한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여 그 심사청구의 수요를 조절할 수 있다면 현행 변형된 무심사주의적 선등록제도를 개선하는 것 보다 훨씬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행 선등록제도의 유지 개선이라는 대안은 기술평가의 권리유지 취소 결정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의신청의 단계는 생략

될 수 있다 하여도 정정청구제도 자체의 부담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이다.

### 3. 제언

위에서 살펴 본 바대로 현재 당면한 주요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현행 선등록제도의 개선보다는 완전 무심사주의의 채택이나 심사주의의 채택이 비교적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권리의 확실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완전 무심사제도의 채택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현재의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당면 과제 앞에서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우선심사제도를 채택한 심사주의가 될 것이다.

별록2004/11



### 과일 저장법

북한에서는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과일의 부패를 최소화하는 방법인 '가스조절 저장방법'을 개발하여 널리 장려하고 있다.

온도는 섭씨 1°C, 습도는 90~95%의 상태에서 40미크로 매타의 폴리에틸렌 주머니에 사과를 싼 후, 밀폐된 저장고에 넣고 산소함량을 낮추는 대신 탄소가스 함량을 높여 과일변질을 막는 방법이다. 이 가스조절 방법으로 6개월간 저장한 결

과 과일이 싱싱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저장법은 저장고의 설치가 간단한 장점도 있다. 발명은 모방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고, 모방으로 인해 인류가 고등생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말이 있듯 우리도 이런 과일 저장법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싱싱하고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보면 어떨런지,,, 아무튼 연구해 볼 일이다.